

등록번호	교육체육과-12998
등록일자	2014.11.27.
결재일자	2014.11.2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생활체육팀장	교육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송재강	박수돈	김종석	이종두	김찬곤	11/28 최창식
협 조	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	김영혜 장형태			

##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재위탁 심의 계획

서울의 중심  
중구



**행정관리국**  
(교육체육과)

#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재위탁 심의계획

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「중구테니스연합회」와 위탁운영 기간이 2015. 1. 28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-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관리 및 운영)
-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(사용료의 조정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(사용료의 조정)

## II 현 황

### 1 시설현황

- 위 치 : 중구 만리동2가 6-1 손기정체육공원
- 면 적 : 1,293.4m<sup>2</sup>
- 시설내용 : 테니스코트 2면
- 준공연도 : 2003. 2. 20.
- 운영시간 : 06:00 ~ 22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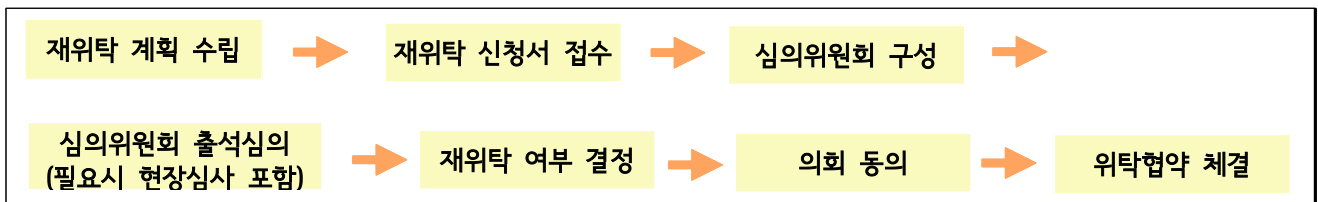
### 2 위탁현황

- 위탁기간 : 2013. 1. 29. ~ 2015. 1. 28.(2년)
- 수탁자 : 중구테니스연합회(대표자: 임창섭)
- ※ 2003년 준공시부터 위탁중

### Ⅲ 재위탁 계획(안)

#### ■ 재위탁 개요

- 재위탁 기간 : 2015. 1. 29. ~ 2018. 1. 28.(3년간)
- 재위탁 내용 :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전반
- 결 정 방 법 :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결정
- 심의절차



#### ■ 심의위원회 개최

- 일 시 : 2014. 11. 27.(목) 16:00
- 장 소 : 부구청장실(예정)
- 인 원 : 6명(위원장 포함)
  -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체육전문가,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
- 참석대상 : 심의위원 6명/수탁관계자
- 심의방법 : 출석심의

#### ■ 위탁조건

-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- 연간 위탁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.
- 테니스장 운영시간은 06:00부터 22:00까지 한다.
- 사용료 징수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대로 한다.
-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
  - 수탁자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  -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  -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할 때
  -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

-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용 및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

#### ■ 위탁금 결정

- 위탁금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법인 2개 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기초금액으로 산정
-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금액 조정하여 위탁금 산출

#### < 연도별 위탁금 >

- ▶ 2003년 ~ 2004년 : 9,140,000원(1년분)
- ▶ 2005년 ~ 2006년 : 8,700,000원(1년분)
- ▶ 2007년 : 10,261,500원(1년분)
- ▶ 2008년 ~ 2010년 : 11,755,080원(1년분)
- ▶ 2011년 ~ 2012년 : 11,755,080원(1년분)
- ▶ 2013년 ~ 2014년 : 13,414,850원(1년분)

### IV 추진 일정

-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: 2014. 11. 27(목) 예정
- 의회 동의(안) 제출 : 2014. 11. 28(금)한
- 재위탁 협약 체결 : 2015. 1월말 예정

### V 소요 예산

#### ■ 소요예산 : 1,980,000원

- 감정평가 수수료(2개법인) : 1,700,000원
- 심의위원 수당 : 280,000원
  - 참석수당 : 70,000원 × 4명 x 1회 = 280,000원

#### ■ 예산과목 : 기획예산과, 증장기적비전제시, 건전재정운용,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## VI 행정 사항

- 재위탁 심의계획 통보 : 중구 테니스연합회
- 심의자료 준비 및 설명 : 중구 테니스연합회장
- 재위탁 여부 심의 의결 : 재위탁 심의위원회
- 민간심의위원 위촉 통보
- 위탁관리 협약시 2015년분 사용료 징수
- 위탁관리 협약문서상 갑을(甲乙)용어 사용 금지

붙임: 1. 재위탁심의위원회 명단.  
2. 관련 법규 1부.

## 『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』 재위탁 심의위원회 명단

연번	직위	성명	직 책	연락처	비고
1	위원장	김찬곤	부구청장	3396-8200	
2	위원	이종두	행정관리국장	3396-8239	
3	위원	김용철	중구생활체육회 회장	*****	
4	위원	장성삼	중구체육회 재무이사	*****	
5	위원	장필기	중구농구연합회 회장	*****	
6	위원	최원익	공인회계사	*****	

## 관련 법규

### 국민체육진흥법

**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7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**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·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3조(설치 및 명칭)**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문화·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4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체육시설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의 계발 및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그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6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)** ①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상황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해당사무 전문가, 의회의원,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**제8조(협약체결 등)**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·주소 및 위탁기간
2.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
3. 수탁기관의 의무·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 하는 경우,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**제23조(사용료의 조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·수익하는 경우 **제22조제1항**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(減額)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7.>

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##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**제16조(사용료의 조정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법 제23조**에 따라 해당 사용·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7.7.>



**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**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6.21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 <신설 2013.6.21.>

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
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·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**제34조(대부료의 조정)**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**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**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